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2019. 7. 4.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6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

우리 재판소에서 2019. 6. 28.(금)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 6. 28.(금)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3건. 끝.

보 도 자 료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6월 28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이후 합병하여 신설법인 ‘서울교통공사’가 이 사건 절차를 수계하였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청구인’이라 함)는 2012. 4. 13.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모든 운영기관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운영기관들’이라 함)과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연락운임 및 일일정산 방안 연구용역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 위 협약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다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각 발주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운임 배분, 정산기준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선정하였다.
- 이 사건 운영기관들은 2012. 6. 21. 연락운송에 의하여 발생하는 운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들 사이에 따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연락운송협정을 체결하였다.
- 서울연구원은 2013. 3. 29. 용역 수행을 마치고 이 사건 운영기관들에 준공검사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기관들은 2013. 4. 19. 위 용역결과에 합격처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용역결과의 시정을 요구하고, 2015. 3. 11.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국토부장관’이라 함)에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연락운송 수입배분에 관한 결정신청을 하였다.
- 국토부장관은 2015. 11. 5.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연락운송)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관련조항]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연락운송) ①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부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결정주문

-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연락운송 운임의 정산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 중 ‘당사자의 신청’은 분쟁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가능하고, 국토부장관의 결정은 당사자의 협의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신청 주체, 결정의 효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거

쳐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토부장관의 결정에 적용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진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국토부장관은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가능하며,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국토부장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국토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통한 불복도 가능하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는 도시철도운영자 등이 연락운송 운임수입 배분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정도에 그치나, 달성되는 공익은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중대한 공익이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운영자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국토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신청 주체, 결정의 효력 및 그 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알 수 있고 행정절차법상 절차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 도 자 료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6월 28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부분과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인 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 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2. 2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과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관련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 결정주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위 부분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큰 반면, 그와 같은 방해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한 제재가 필요한 방해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입법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응급의료법을 통하여 제재하여야 할 방해 행위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며 그 해석의 판단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나열하고 있다.

- 방해 행위의 구체적 예시로 열거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공통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 중 ‘그 밖의 방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에 준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와 같이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규정형식 및 문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응급진료에 대한 방해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고 하여 응급환자로 하여금 응급의료종사자의 모든 조치에 수긍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응급환자 본인의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규범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규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응급환자 본인의 모든 행위가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내지 항의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는 정당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즉,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응급진료 방해 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 수단으로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보 도 자 료

총포보관 사건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6월 28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기총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공기총에 대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 공기총을 2015. 6.경 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2018. 1.경 서울 구로경찰서 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1심 계속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심판대상조항들) - 소극

- 심판대상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공기총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 공기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발생하는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보관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소지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들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이 사건 부칙조항) - 소극

-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방법을 비롯하여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에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